제1708호
2019. 6. 20.(목)

발 행 인 : 영 등 포 구 청 장
편 집 인 : 홍 보 전 산 과 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전 화 : 02-2670-7554

영등포구보

규 칙

· 제75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 1
· 제76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8
· 제76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9

고 시

· 제2019-92호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13
· 제2019-93호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 16
· 제2019-94호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 ····· 17
· 제2019-95호 도로명주소 도로구간 변경 및 폐지 고시 ····· 20
· 제2019-96호 대림3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23
· 제2019-9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 26

공 고

· 제2019-1080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27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홈페이지<http://www.ydp.go.kr.(행정정보→행정자료→영등포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02-2670-7554 / 전송 : 02-2670-3581)
◎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
◎ 구보게재접수는 D-3일(월요일)까지 접수

D-3접수	→	D-2일 편집 및 교정	→	D-1일 인쇄 및 제책	→	D일 보급 및 배포

영등포구

영등포구 발간등록번호
3180194-0055-2019

규 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채 현 일
2019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75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3]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33조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행 정, 세무, 사회복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행 정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품질관리, 선박설계, 소음진동, 선박건조, 선박기계),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설비보전, 궤도장비정비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전자부품장착(SMT)

계급 /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공 업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공 업 (화 공)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화공)
농 업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 업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시설원예)	기사(종자, 산림경영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시설원예, 화훼장식)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수 의	수의사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	사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 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전문간호사, 조산사, 사회복지사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1급)	사회복지사 2급,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2급)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자연생태복원)

계급 /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시 설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콘크리트)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콘크리트)
시 설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방송통신 (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파전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위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간호조무		간호사	
토목운영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기운영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계운영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윤활관리,컴퓨터응용가공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화공운영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가스운영		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	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고분자제품 제조)
선박항해 운영 선박기관 운영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농림운영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비고: 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 후 직급별로 2년 이상 해당직무에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해당직무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동 주민센터 복지팀"의 업무관할로 한정한다.			

2.연구·지도사

계급 / 직렬	연 구 사
공업연구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체, 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화학분석)
보건연구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연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농촌지도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비고: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채 현 일
2019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76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는”을 “있을”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사양서”를 “설명서”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날인함으로서”를 “도장 찍음으로써”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날인함으로서”를 “도장 찍음으로써”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50조 중 “제83조”를 “제84조”로, “제84조”를 “제85조”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를 제8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도입) 사용인은 허가재산을 수익 목적의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구민이 해당 시설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도입) 임차자는 대부재산을 수익 목적의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구민이 해당 시설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채 현 일
2019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76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를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를 "담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폐업신고를 접수한 경우"를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부령 제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를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50미터"를 "100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령 제7조의3제2항에 따라"를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으로,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를 "이 경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 해당 점포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에 있을 경우 그 밖의 소매인과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를 "점포 출입문이 건물 외부에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3항 및 부령 7조의3제1항제2호"를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등을 받아 영업중인 장소"를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로 한다.
제7조 중 "그 인근장소로서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를 "그 인근 장소는 제5조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기한(휴업하는 건물의 사용승인 시까지 등)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부령 제7조의3제1항 또는 제7조의3제2항의 소매인으로 간주하여 소매인 지정기준"을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제7조의3제3항의 소매인으로 간주하여 제5조의 소매인 지정기준"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 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④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

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

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단,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 100미터 거리제한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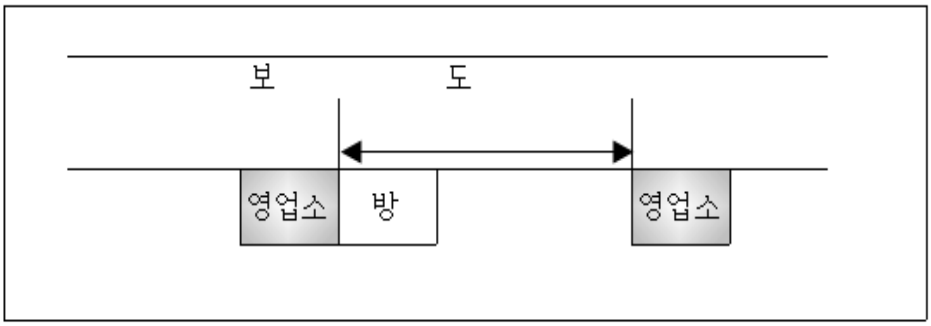
③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이 규칙 시행 전「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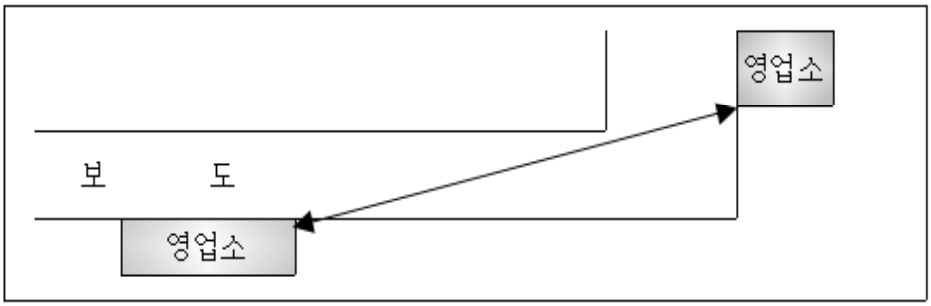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제9조제4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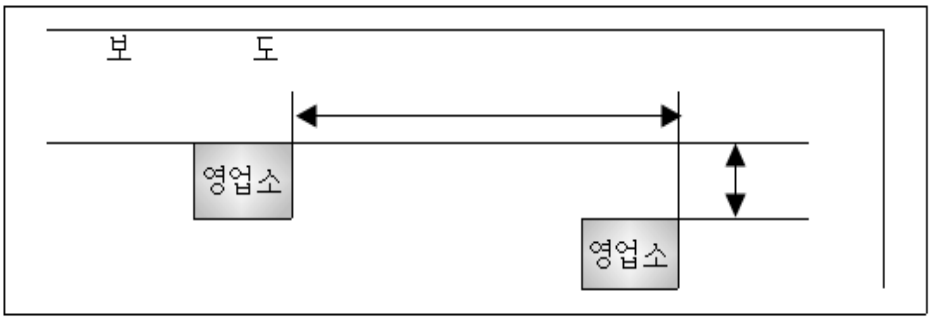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간 거리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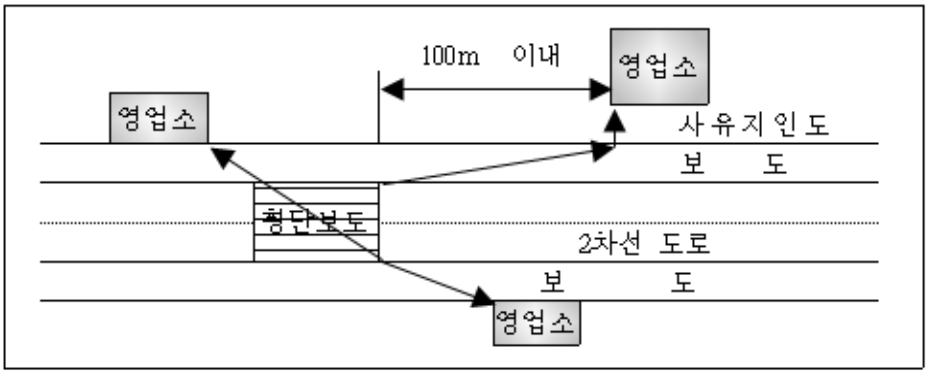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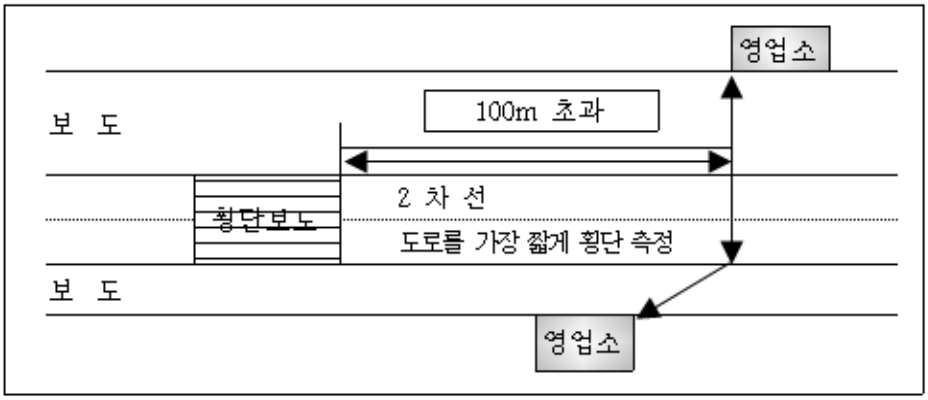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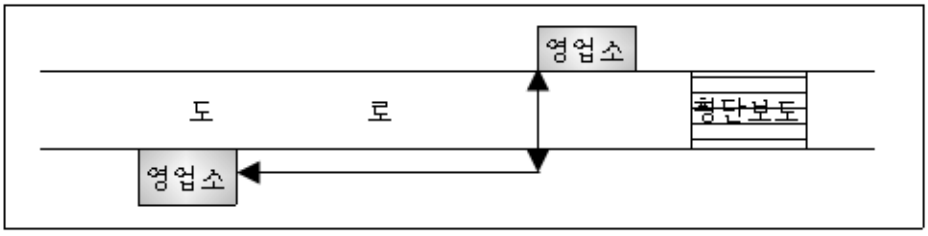
4. 횡단보도 100미터 이내의 2차선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및 사유지 인도와 보도가 있는 거리 측정



5. 횡단보도 100미터 이상의 2차선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6.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정권자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9-92호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신길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신길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2-84호(2012.8.30.)로 사업시행인가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13호(2014.9.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6-28호(2016.4.14.)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7-22호(2017.3.16.)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7-108호(2017.11.6.)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명 칭: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영등포구 신길동 240-16번지 일대
  2) 면 적: 74,091.1㎡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조재석
  2)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45 강남빌딩 3층

라.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일: 2019. 6. 13.

마.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
	계	지 상	지 하		
9,009.25	209,759.21	132,057.86	77,701.35	17.42	255.36

2) 건축시설

구 분		연면적(㎡)	동수	층 수	세대수	대지면적(㎡)
합 계		209,759.21				52,825.8
공동주택	분양	178,277.07	11	지하4층/지상29층	1,210	43,750,7
	임대	27,315.66	3	지하4층/지상21층	266	6,852,7
	소계	205,592.72	14		1,476	51,714.6
상가	소계	4,166.49		지하1~2층		1,111.2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구역면적(합계)		74,091.1	100.00	
정비기반시설	소 계	19,918.6	26.88	
	도 로	4,095.6	5.53	무상귀속
	공 원	13,910.6	18.77	
	녹 지	1,912.4	2.58	
택지(획지)	소 계	54,172.5	73.11	
	공동주택	51,714.6	69.80	
	종교시설	2,068.3	2.79	
	공공공지	389.6	0.52	

4) 권리자별 관리처분

대상자	분 양				청산·수용·협의매수
	소계	공동주택	주택 및 상가	상가	
678	417	395	5	17	261

5)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 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									
	계	39㎡	42㎡	49㎡	59㎡			84㎡		114㎡
					A형	B형	C형	A형	B형	
계	1,476	124	73	121	549	139	22	338	86	24
토지등 소유자	504		4	8	354	8		116	2	12
조류시설	5		2			2		1		
일반분양	701		59	6	190	129		222	83	12
임 대	266	124	8	107	5		22			

※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02-2670-4178)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9-93호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영등포구고시 제2010-49호(2010.9.16.)로 사업시행인가 고시하고, 영등포구고시 제2014-123호(2014.2.6.)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5호 (2015.2.26.), 서울특별시 제2015-254호(2015.8.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29호(2016.8.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9호(2017.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7호(2017.7.20.), 서울특별시 제2018-269호(2018.8.3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583-1번지 일대(76,602㎡)
3.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88길 3-1(2층)
4.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
5. 사업시행변경 인가일: 2019년 6월 14일
6. 변경사유 및 내용: 어린이집(국·공립 전환) 및 주민공동시설 연면적 증가 등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대지면적	59,073.6㎡	59,073.6㎡	-
건축면적	11,524.746㎡	11,581.882㎡	증) 57.136㎡
연 면 적	233,517.917㎡	233,816.877㎡	증) 298.96㎡
건 폐 율	19.51%	19.61%	증) 0.1%
용 적 률	264.12%	264.51%	증) 0.39%
높이(층수)	지하2층/지상29층	지하2층/지상29층	-
세 대 수	1,546세대 [임대 286세대]	1,546세대 [임대 286세대]	-
주된용도	공동주택(임대포함)	공동주택(임대포함)	-

8. 기타 관계도서 :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 (☎02-2670-3531)에 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9-94호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5(영등포동2가) 외 9건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2670-372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 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2가 94-155,28-127, 28-137, 28-146, 28-147, 28-167, 94-15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5 (영등포동2가)	2019-06-20	2010-05-27	옛 버드나루 (양화진)의 명칭 인용	신규 부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2, 1-6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39길 15 (도림동)	2019-06-20	2010-05-27	도신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신규 부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15-8, 11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60길 8 (신길동)	2019-06-20	2010-05-27	도신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신규 부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3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38길 6 (신길동)	2019-06-20	2010-05-27	신길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신규 부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28-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24길 16-3 (영등포동4가)	2019-06-20	2010-05-27	영신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신규 부여

■ 도로명주소 폐지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고시일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 635 (대림동)	2019-06-17	2019-06-20	건물 철거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 351-14 (대림동)	2019-06-17	2019-06-20	건물 철거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71 (대림동)	2019-06-17	2019-06-20	건물 철거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35길 25 (양평동3가)	2019-06-17	2019-06-20	건물 철거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0길 12 (양평동4가)	2019-06-17	2019-06-20	건물 철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9-95호

도로명주소 도로구간 변경 및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 도로구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고 시 일 : 2019. 06. 20.
2. 고시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고시대상

총 계 (구 간)	위 계 구 분				비 고
	대로	로	길	기타 (종속구간)	
3	-	-	-	3	변경 1 폐지 2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02)2670-37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도로구간 변경 및 폐지 조서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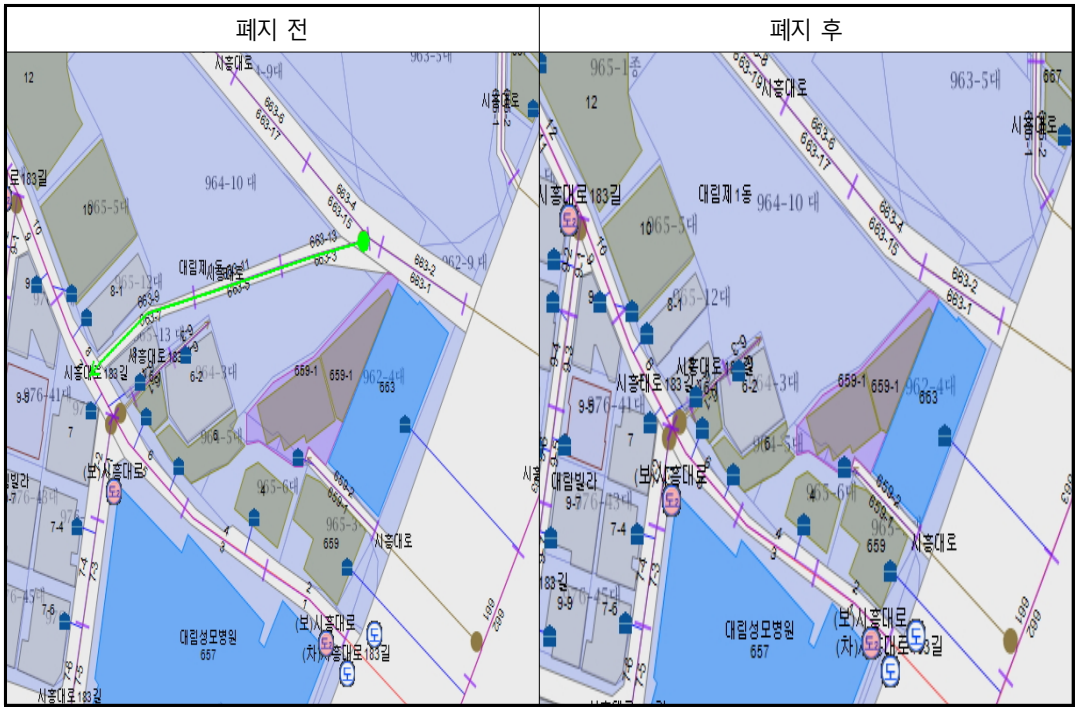
□ 도로구간 폐지 조서(종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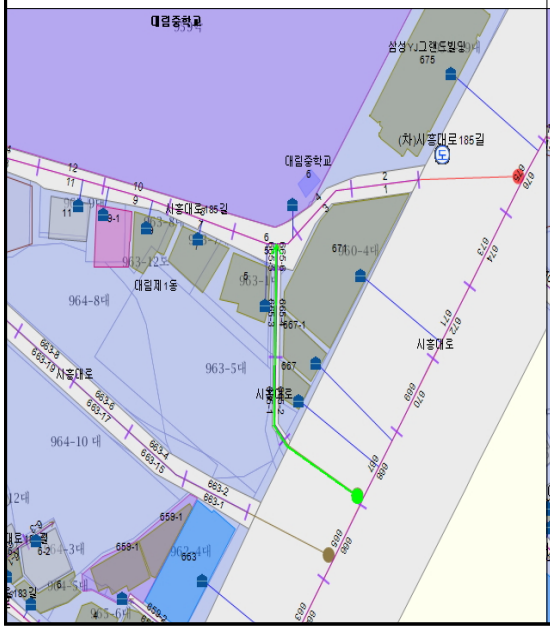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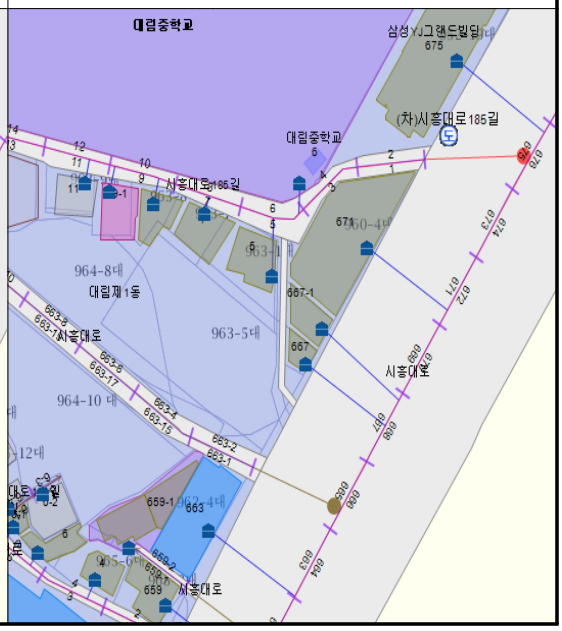
일련번호	도 로 명	도로 구분	관할 행정 구역	도로구간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폐지사유	비 고
				시작 지점	끝지점	중심선	길이 (m)	폭 (m)		시작번호	끝번호		
1	시흥대로	1차종속도로	영등포구	대림동 994-4	대림동 948-1	도면 참조	73	2	20	665-1	665-6	건물 신축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2	시흥대로	1차종속도로	영등포구	대림동 994-4	대림동 948-1	도면 참조	65	2	20	663-3	663-13	건물 신축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 도로구간 변경 조서(종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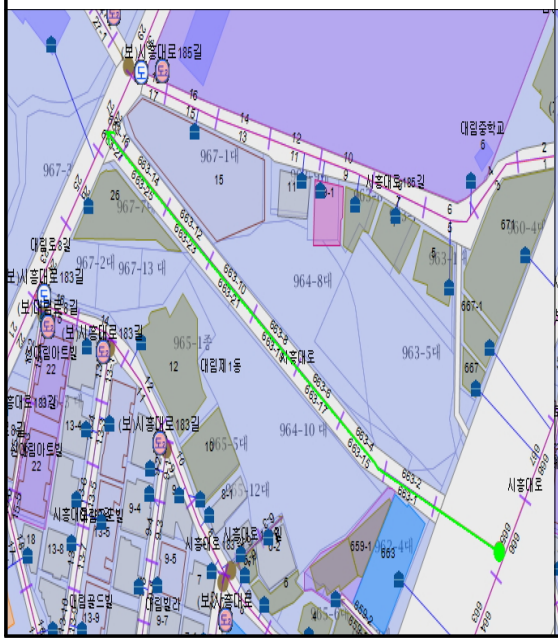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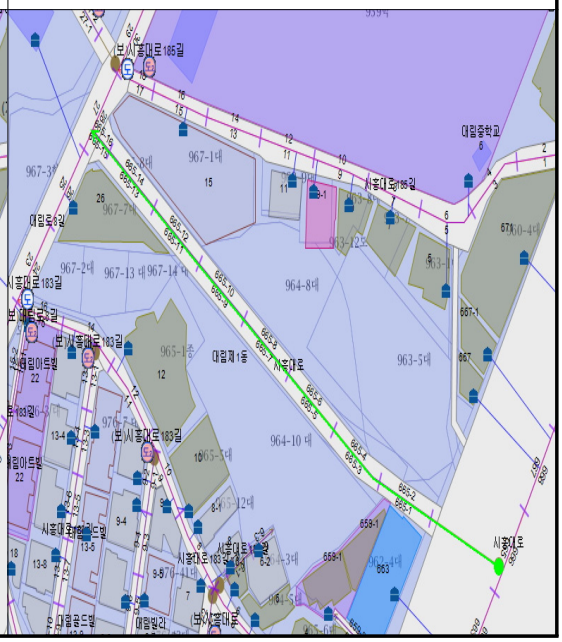
일련번호	도 로 명	도로 구분	관할 행정 구역	도로구간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변경사유	비 고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길이 (m)	폭 (m)		변경전	변경후		
1	시흥대로	1차종속도로	영등포구	대림동 994-4	대림동 948-1	도면 참조	175	8	20	663-1~ 663-27	665-1~ 665-16	기초번호가 착오로 부여된 종속도로 기초번호 수정	

1. 도로구간 폐지 도면



폐지 전	폐지 후
	

2. 도로구간 변경 도면

변경 전	변경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9-96호

대림3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79호(2008.10.30.)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2-12호(2012.03.02.)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6-24호(2016.03.24.)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7-124호(2017.12.14.)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8-63호(2018.08.02.)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대림3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명칭 : 대림3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1동 917-49번지 외 271필지
   나. 면적 : 53,29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림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8길 39, 4층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19년 06월 17일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단위 : ㎡)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53,294.00	-	53,294.00	100.0	
정비기반시설	소계	7,911.00	-	7,911.00	14.8	
	도로	5,039.00	-	5,039.00	9.4	기부채납
	어린이공원	2,872.00	-	2,872.00	5.4	기부채납
획지	소계	45,383.00	-	45,383.00	85.2	
	획지1	36,096.00	증)16	36,112.00	67.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7,414.00	감)16	7,398.00	13.9	종교시설 (존치+대체)
	획지3	689.00	-	689.00	1.3	종교시설 및 근생 대체부지
	획지4	666.00	-	666.00	1.3	종교시설 대체부지
	획지5	518.00	-	518.00	1.0	의료시설 대체부지

나.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단위 : ㎡)

구 분		변경(사업변경인가에 의함)
연면적	지상층	89,783.6889㎡
	지하층	47,644.1660㎡
	총 계	137,427.8549㎡
용 적 율		248.63%
건축규모 및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지하3층/지상21층(평균층수18층), 아파트 13개동, 859세대(소형임대주택 55세대)

다. 주택의 규모 등 공급계획(변경없음) (단위 : ㎡)

TYPE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공용	공급면적	대지면적
59㎡ A형	182	340	59.9680	22.7612	82.7292	33.2807
59㎡ B형	90		59.9680	25.5471	85.5151	34.4015
59㎡ C형	68		59.9792	27.1867	87.1659	35.0656
84㎡ A형	237	519	84.9571	25.7648	110.7219	44.5418
84㎡ B형	82		84.9950	24.7251	109.7201	44.1388
84㎡ C형	200		84.9948	25.3805	110.3753	44.4024
계	859		64,493.2643	21,500.6937	85,993.5951	34,594.0161

라. 근린생활시설(상가) 공급계획(변경없음) (단위 : ㎡)

구 분	변경		비 고
	분양면적	대지면적	
근린생활시설	3,332.9651㎡	1,376.0701㎡	

마.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규모 및 시기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증감액
정비사업비 변경항목 내역	매도청구자 매입비용	73,396,500	71,796,500	-1,600,000
	(유)대여금이자	19,917,000	15,917,000	-4,000,000
	학교용지부담금등	3,152,638	2,152,638	-1,000,000
	법인세,종부세,원천징수세	4,000,000	10,600,000	+6,600,000

바.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변경없음
사.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 변경없음

6. 관계도서 등은 생략하며, 세부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주택과(☎2670-3662) 및 대림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844-504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9-9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지정번호	공동주택명	금연구역 지정 범위	소재지
제 6호	당산드림시드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영등포구 국회대로 53길 30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19. 6. 24.

4. 홍보 및 계도 기간: 2019. 6. 24.~9.15.(약 3개월)

5.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과태료 부과일: 2019. 9. 16.
○ 과태료 부과 금액: 5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지원과(☎2670-4903)으로 문의바랍니다.

공 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9-1080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운행정지명령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3항제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공 고 명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19. 6.20. ~ ’19. 7. 4.
3. 공고대상 : 81가1847 차량 외 7대

연번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 명	소유자	사용본거지 주소	명령일자	운행정지 명령사유
1	81가1847 (KMFWBX7KBKU001272)	그랜드 스타렉스(GRAND STAREX)	**컴퍼니(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길 **, ***호(당산동)	2019-5-16	소유자 요청
2	12러3672 (KLYMF48ZDDC601647)	스파크 1.0 DOHC LPG	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길 *-*(신길동)	2019-5-22	소유자 요청
3	38고4837 (WDDHF0CB7EB060793)	E220 CDI	**** **캐피탈(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길 **-*, *층(여의도동)	2019-5-22	소유자 요청
4	75우2291 (KMJWWH7HP6U699258)	스타렉스(STAREX)	노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길 *-**(대림동)	2019-6-3	소유자 요청
5	22두0160 (KMHGF41DBFU090892)	에쿠스(EQUUS)	박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길 **(신길동)	2019-6-4	소유자 요청
6	04노3076 (KMHEU41MP5A088066)	쏘나타(SONATA)	한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길 *, 비동 ***호(신길동)	2019-6-10	소유자 요청
7	38우7422 (WDDNG71X47A134526)	S500L	김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 ***동 ***호(문래동*가, 문래임광그대가)	2019-6-10	소유자 요청
8	경기71모5435 (KPDFBDL811P133567)	이스타나-롱15 코치	안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길 *-*(신길동)	2019-6-10	소유자 요청

4. 공고내용

○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위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며, 이와 같은 사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7의2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2670-4282)